

★ 으뜸어르신주야간보호센터 이용에 관한 사항 ★

1. 이용 계약

1) 계약사항

(1) 계약기간 :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 다만, 시설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

(2) 보호자의 권리 의무

- ① 이용자의 안정적인 생활유지 및 이용을 위하여 담당자의 요청에 협조한다.
- ②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와 서비스 저하를 우려하여 프로그램 운영시간에는 프로그램실 방문을 삼간다.

(3) 계약의 해제

- ① 본인이나 가족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
- ② 회복이 어려운 위독한 병에 걸렸거나 또는 전염병 등에 감염되었을 경우
- ③ 이용기간 중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여 주.야간 보호센터 생활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(4) 기타사항

- ① 보호자와 기관의 상호간 작성된 계약서는 기명날인 후, 각 1통씩 보관한다.
- ② 퇴소시(사망, 거주지이전, 장기간 입원 등) 물품은 방문 시 인계한다.

제4조 (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 의 권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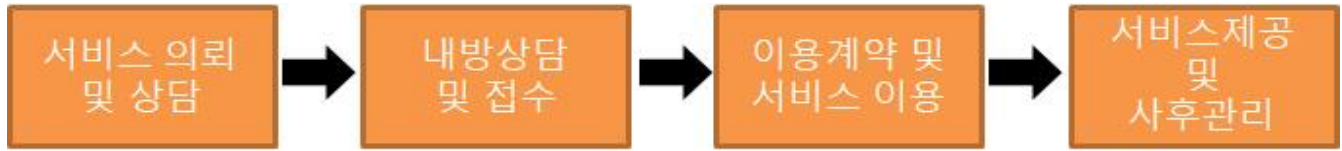
- 1.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2.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- 3.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
- 4.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5.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- 6. 이용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7.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8.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

제5조 (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 의 의무)

- 1.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·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- 2.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,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- 3.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- 4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
- 5.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★ 으뜸어르신주야간보호센터 이용에 관한 사항 ★

2) 이용 절차



3) 의료적 절차

위급 상황 및 의료적 개입이 필요할 시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협력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며, 진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.

4) 시설물 사용 시 주의사항

- (1) 안전을 위하여 직원의 요청을 따르도록 하며, 외부 출입 시 직원과 동행하도록 한다.
- (2) 입소자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파손 및 비품 등을 분실, 훼손했을 때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.

5) 승영수칙

- (1) 운전자 자격요건 : 직원 중 운전면허 1,2종 취득자,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자(스타렉스, 레이)
- (2) 동승자의 역할 : 승영차량 운행 시 반드시 1인의 보조자가 탑승하여 으뜸어르신 승하차시 보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.

(3) 차량안전수칙

- ① 안전운행을 위하여 교통안전 규칙을 철저히 지킨다.
- ② 으뜸어르신의 승차 및 하차 시 안전위치를 확인 후 운행한다.

(4) 사고 시 조치사항 : 응급상황(대상자 건강문제, 차량사고 등) 발생 시 센터장 또는 사무실에 유선연락 후 즉시 관련조치(보호자 연락, 병원이송, 보험사 연락)을 취한다.

(5) 차량운행시간 : 오전(07:40-10:00), 오후(16:00-19:00), 주말(08:00-18:00)

6)준비사항

- (1) 서 류 :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이용계획서 ► 이용 당일
- (2) 물 품 : 실내화, 칫솔, 양치컵, 여벌옷 ► 이용 당일
- (3) 기 타 : 처방전(약물복용 대상자), 복용약(해당자), 의료보험카드(의료보호대상자)